

기능성세라믹생산기술고도화지원센터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한 지식경제부 지정 기능성세라믹 생산기술 고도화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센터의 명칭은 기능성 세라믹 생산기술 고도화 지원센터 (이하 '기능성세라믹센터'라 한다)라 한다.

제3조(소재) 본 센터는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내에 둔다.

제4조(센터의 목적) 본 센터는 기능성 세라믹 지원 원스톱 분석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기업의 생산기술 개발활동을 기능적으로 지원함에 있다.

제5조(센터의 사업) 본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① 원활한 센터 구축을 위한 기기/인적/행정적 인프라 구축
- ② 기능성 세라믹 중소기업의 신상품 개발을 위한 기능성 세라믹의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
- ③ 지역 거점 전방위적 산업체 연구지원 클러스터 육성
- ④ 대기업 기술 지원활동 및 분석 지원으로 수도권 세라믹 산업체 지원
- ⑤ 지속적인 세라믹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

제 2 장 조 직

제6조(기구) 본 센터에는 운영위원회, 장비도입위원회, 기술지원부, 외부협력부, 인력양성부, 행정팀을 둔다. 각 부와 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사업계획의 수립과 수행 등 제반 사업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분장한다.

제7조(센터장)① 센터장은 본 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부교수 이상의 가천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한다.
- ③ 센터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 사업기간 중 센터장의 임명은 지식경제부와 협의한다.

5-1-21~2 제5편 부설연구기관

④ 센터장 지원 행정인력을 배치한다.

제8조(운영위원회)① 센터의 운영 방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센터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참여 산업체의 추천을 받은 외부 산·학·연 전문가 3명과 각 부장이 참여한다.

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운영에 관한 기본계획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5.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장비도입위원회)① 센터는 장비결정과 도입의 심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비도입위원회를 둔다.

② 센터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산업체의 추천을 받은 외부 산·학·연 전문가 3명과 각 부장이 참여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는 센터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신규장비 구입의 필요성 및 사양 검
2. 기존 장비와의 중복 구입 여부 및 구입 장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
3. 기타 센터장이 요청하는 사항

⑤ 센터는 장비구입 1개월 이전에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의 목록과 필요성, 장비의 사양 등을 기록한 장비도입신청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기술지원부)① 센터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상담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지원부를 둔다.

② 지원부는 가천대 교수진으로 구성한다.

③ 부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(측정지원부)① 센터소유 장비의 유지보수, 사용스케줄 관리를 위하여 측

정지원부를 둔다.

② 지원부는 가천대 교수진으로 구성한다.

③ 부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12조(외부협력부)① 경기도 소재 RIC, TIC, GRRC 교류 및 본 센터 홍보업무 수행을 위하여 외부협력부를 둔다.

② 협력부는 가천대 교수진으로 구성한다.

③ 부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13조 (인력양성부)① 센터는 전자 세라믹 관련 R&D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을 위하여 인력양성부를 둔다.

② 양성부는 가천대 교수진으로 구성한다.

③ 부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장 재 정

제14조(재정)① 본 센터의 재정은 지식경제부 지원금, 지방자치단체 지원금, 교비지원금, 참여업체 지원금, 기타외부지원금 및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본 센터의 재정은 연구비, 연구용 시설·장비 및 재료비, 연구활동비 및 센터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 4 장 보 칙

제15조(운영세칙)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